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합산발급 방법 및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한시적으로 개 사육을 추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금액 확대(안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나.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소득기준을 각각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에서 3,700만 이하로 상향함.

다.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관련 소득규정 신설(안 제26조의3제12항 신설)

대형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합 운용 후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 출시함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 등을 정함.

라.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1호)

상품·제품 등을 조건부·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마.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분류 합리화(안 제51조)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안 제78조의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의 50%에 더하여 나머지 50%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사.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안 제117조의2제3항·제4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규정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요건 상향(안 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요건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원 상향함.

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안 제167의3제1항제1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

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함.

차.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방식 구체화(안 제178조의8제2항
·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신설 및 안 제178조의11제1항)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및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등이 보유한 국외주식 등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주식등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을 규정함.

카.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안 제180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규정(안 제189조의2제4항)

간접투자회사등이 연금계좌에 소득 지급 시마다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적립액을 누적 합산하고,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공제적립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파.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서류 규정(안 제207조의2제15항·제16항 및 제17항)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안 제210의2 및 제2

10조의3)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규정함.

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안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함을 명확히 함.

너.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안 별표 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개 400마리를 추가하되, 2027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함.

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보육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월 15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160만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10만원”을 “260만원”으로, “3천만원”을 “3,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득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 수익자가 분배받는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

익”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의3 중 “금융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한다.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나.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제78조의3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한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항제2호나목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 \times (50\% + C \times 50\%)$$

A: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B: 업무사용비율
C: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과세기간에 제4항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 \times C$$

A: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B: 업무사용비율
C: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과세기간에 제4항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제87조제1호의2에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을 “60”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가산한 금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1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을 “다음”으로, “계산한 율을 곱한”을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A × B) + (C × D) + (E × F)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조 제6항의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B: 제4항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 조정계수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조 제9항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D: 제4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조정계수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조 제9항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F: 제4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 조정계수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조 제9항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연금소득 조정계수 및 이자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당소득 조정계수: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기준소득에 대하여 나목의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가. 기준소득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기타 차감 금액

* 기타 차감 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금액,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매입자금을 각각 차감함.

나. 조정계수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88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7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2.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3. 이자소득 조정계수: 제1호가목의 기준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73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53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10억원 초과	0.35

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9항”을 각각 “제12항”으로 한다.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을 교습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 중 “어업인이”를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지적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제163조제10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의 취득가액의 변동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6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가 적용된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자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166조제6항 중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를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7조제5항 후단 중 “기간“은”을 “기간”은”으로, “기간“으”를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

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78조의8의 제목 “(대주주의 범위)”를 “(대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법 제94조제1항제3

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제178조의9 및 제225조의2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주식등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자가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국외주식등

제178조의9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른 시가

제178조의11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주식등의”를 “주식등의”로,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로 한다.

제179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80조제1항제2호 중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로 한다.

제189조의2제1항제1호 중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frac{A}{B} \times C$$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 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적립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text{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0.55$$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 제148조 제1항 각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국외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퇴직자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07조의2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자(법 제119조의3 제7항에 따라 법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 ⑯ 법 제119조의3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또는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210조의3제13항(중전의 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제211조의2제6항 전단 중 “등록”을 “등록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통지”로 한다.

제225조의2제2항 중 “법 제174조의2제3호”를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12,500원”을 “20,83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29,160원”을 각각 “45,83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5,000원”을 “33,330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9조의 “제203조”를 “제203조 제1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국외 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2.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적공부상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

조의3제1항제1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2.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개의 경우 2027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한다.
소	50마리	
돼 지	700마리	
산 양	300마리	
면 양	300마리	
토 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양 봉	100군	
개	400마리	

제13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 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외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료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아. 소화물 전문 운송업 자. 기타 해상 운송업(낙시어선업으로 한정한다)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측량사업 더.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러.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 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 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카. 앰블런스 서비스업 타. 유사 의료업 파.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13. 카구네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카. 앰블런스 서비스업 타.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사. 그 외 기타 숙박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치. 여행사업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
 히. 스키장 운영업
 가.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냐. 수영장 운영업
 다. 볼링장 운영업
 라.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마.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바.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샤. 사무용 기기 소매업
 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자.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 사진 처리업 카. 낚시장 운영업 타.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별 금액----- -----.
<신 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250만원
<신 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200만원
<신 설>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160만원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 ----- -- 260만원 ----- ----- ----- 3,700만원 -----

업무 용 승용 차 관 련 비용	×	업무 사용 비율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해당 과세기간에
				제4항제1호를 적용
				받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가. 제4항제2호나목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 \times (C \times 50\% + 50\%)$

A: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B: 업무사용비율
 C: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과세기간에 제
 4항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
 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 \times C$

A: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B: 업무사용비용
 C: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과세기간에 제
 4항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
 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 43 –

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가산한 금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 다음

----- 계산한
-----.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A × B) + (C × D) + (E × F)

-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같은 조 제6항의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B: 제4항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 조정계수
-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같은 조 제9항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D: 제4항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조정계수
-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같은 조 제9항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F: 제4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 조정계수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조 제9항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연금소득 조정계수 및 이자소득 조정계수는 다

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frac{A}{B} \times C$$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음 각 호와 같다.

1. 배당소득 조정계수: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기준소득에 대하여 나목의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가. 기준소득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기타 차감 금액

* 기타 차감 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금액,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매입자금을 각각 차감함.

나. 조정계수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88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7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2.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3. 이자소득 조정계수: 제1호가목의 기준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73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53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10억원 초과	0.35

⑤ 삭 제

⑥ ~ ⑧ (생 략)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신 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신 설>	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을 말한다.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1. 제12항----- ----- -----
<신 설>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 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 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을 교 습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 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 다.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 은 금액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⑪ ~ ⑮ (생 략)	2. 제12항----- ----- ----- 3. 제12항----- ----- ----- ⑭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 5항까지와 같음)
⑧·⑨ (생 략)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 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 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⑪·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⑬ ----- ----- ----- -----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⑨ (생 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 다. 1. 삭 제 2.·3. (생 략)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4.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나. (생 략)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u>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u> 5. (생 략) ⑪ ~ ⑮ (생 략) <u><신 설></u>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u> - 5. (현행과 같음) ⑪ ~ ⑮ (현행과 같음) <u>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 시 실시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u>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호 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 ----- -----

말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② ~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생 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2. (생 략) <u><신 설></u> ⑪ ~ ⑬ (생 략)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지적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10.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취득가액의 변동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
---	---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 설>

의 부분 본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가 적용된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자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 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 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 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 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 ----- ----- -----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 산) ①·② 삭제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 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 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	⑤----- ----- ----- ----- ----- ----- ----- ----- ----- ----- -----.

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 다.	----- ----- ----- ----- ----- 기간”은 ----- -----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 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 은 “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 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 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의 신고일까지”---.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 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 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 ----- ----- ----- ----- ----- -----

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 11. (생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생략)

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생략)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4) (생략)

<신설>

-----.

1. ~ 11. (현행과 같음)

1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 7억원 -----

3)·4) (현행과 같음)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

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

<신설>

12의2.·13. (생 략)	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2의2.·1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생 략) <신 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법 제94조 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제178조의9 및 제225조의2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주식등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
------------------------	--	--	---	---

	<u>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u> 3. <u>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자가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국외주식등</u>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생략)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① <삭제>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 ----- -----.		②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 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른 시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 ----- ----- ----- -----.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 ① ----- ----- 주식등의 ----- ----- --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2. -----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
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
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
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
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
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
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
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
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
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
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
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 ①

1. 원천징
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
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
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frac{A}{B} \times C$$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
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
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
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
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게 제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또는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⑩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략) <신설>	⑪ 제15항 및 제16항----- ----- ----- -----.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단서에	<신설> ② ~ ④ (생략)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⑥ (생략) <신설> ⑦ ~ ⑪ (생략)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⑧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⑬ ----- -----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 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 ----- ----.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 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⑬ (생략)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 서의 발급·전송, 각 설비 및 시 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 산서”로 본다. ⑦ (생략)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등록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 무의 통지----- ----- ----- ----- ----- ⑦ (현행과 같음)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

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생략)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 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 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 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 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 ----- ----- ----- ----- ----- ----- ----- ----- ----- ③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 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재정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 ----- ----- ----- ----- ----- ----- ----- -----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 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 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 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 ----- ----- ----- ----- ----- ----- ----- ----- ----- ----- ----- ----- -----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4 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은 2 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제43 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 다. <신 설>	-----.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 ----- 제203조 제1항부터 제6 항 ----- ----- ----- ----- ----- -. 제24조(국외 원천 퇴직소득 세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7 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